

#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
----------	-----

제출연월일 : 2000. 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현재 시행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저 함.

## 2. 주요골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중 현재 추진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 폐지
  - 지붕개량사업
  -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
  -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
  - 변소개량융자금
  - 태양열이용시설 융자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 폐지
  - 융자 및 보조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 제도 폐지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 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별 첨
- 신규조문대비표 : 별첨

##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개량을 말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군수는 지붕개량 및"을 "군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2조(용어의정의) (생략)                      1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사업과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균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8조(자금의신청)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조.용자신청서에는 같은면에 거주하는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할 차용증서(별지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보조및용자)                      ①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용자할수 있다.                      ② (생략)                      ③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용어의정의) (현행과같음)                      1“농어촌주택사업이라함은 주택개량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수선 및 개량을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제8조(자금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lt;삭 제&gt;</p> <p>①군수는 -----                      -----                      -----                      -----</p> <p>② (현행과 같음)                      ③-----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 하지않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지분개량사업 ○이율: 무이자 ○상환방법: 1년거치3년균분상환</p> <p>2. 주택개량사업 가. (생략)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용자금 ○이율: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5년거치15년체증상환</p> <p>다. 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용자금 ○이율: 무이자 ○상환방법: 3년거치5년균분상환</p> <p>라. 변소개량용자금 ○이율: 무이자 ○상환방법: 3년거치5년균분상환</p>	<p>(단서삭제)</p> <p>1. &lt;삭제&gt;</p> <p>2. 주택개량사업 가. (현행과 같음) 나. &lt;삭제&gt;</p> <p>다. &lt;삭제&gt;</p> <p>라. &lt;삭제&gt;</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마. 태양열이용시설자금</p> <p>○이율:무이자</p> <p>○상환방법:3년거치5년균분상환</p> <p>3.택지조성사업</p> <p>○이율:무이자</p> <p>○상환방법:3년거치5년균분상환</p>	<p>마. &lt;삭제&gt;</p> <p>3.현행과 같음</p>	
<p>제3장 균직염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p>	<p>제3장 &lt;삭제&gt;</p>	
<p>제10조(세입세출)①균직염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공장제품의 판매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p> <p>②균직염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③균 직염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10조 &lt;삭제&gt;</p>	

## 관 계 법 령 발 취

###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힘있는 국민 살기좋은 평창”

#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330-2472 / 전송 (0374) 33 - 6356  
처리 부서 : 도시과 건축계 (본층 3층) 과장 : 석명준 담당 직급의 실무 :

문서번호 : 도경58500 - 86

시행일자 : 1999. 12. 1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부군수		석명준
과 장	석명준	
기안자	[서명]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시책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현재 추진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코저 불임과 같이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저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예고장소 : 읍면 게시판
3. 예고일자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결과보고 : 99. 12. 27 한

붙임 : 1. 입법예고문 1 부

2.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부 끝

# 평 창 군 수

수신처 : 도 1-8